

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규정 오산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

제정 2024년 5월 17일 조례 제2167호

제1조(「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1항제1호 중 “만75세 미만”을 “75세 미만”으로, “만75세 이상”을 “75세 이상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오산시 청년 근로지원금 등 지급 조례」의 개정) 오산시 청년 근로지원금 등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”를 “18세 이상 34세 이하”로 한다.

제3조(「오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」의 개정) 오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제6호 중 “만 65세 이상”을 “65세 이상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오산시 오산창작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오산시 오산창작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만 19세 이상”을 “19세 이상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오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오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만 65세 이상”을 “65세 이상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오산시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오산시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만 18세 미만”을 “18세 미만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호 중 “만 18세 미만”을 “18세 미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만 18세 이상 만 20세 미만”을 “18세 이상 20세 미만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」의 개정)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

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규정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
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”를 “19세 이상 24세 이하”로 하고, 제4조 중 “만24세”를 “24세”로 한다.

제8조(「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만 65세 이상”을 “65세 이상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만 65세이상”을 “65세이상”으로 한다.

제9조(「오산시 재정비촉진사업 주민의견수렴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오산시 재정비촉진사업 주민의견수렴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만19세 이상”을 “19세 이상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